<국가자격 부정행위 예방 캠페인: '부정행위, 묵인하면 계속됩니다'.>

시험명	2024년 정기 기능사 3회			
수험번호	24900106	시험구분	필기	(3.5)
종목명	웹디자인기능사			
성명	김현우	생년월일	1995년 06월 25일	, भू श क्ष _र
시험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6월 16일 (일) 11:00 까지 입실완료 장 소: 성남그린컴퓨터아카데미 별관(미금역) [4실_5층](주차불가)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7(금곡동) 이코노샤르망 5층 그린컴퓨터이카데미 별관 - 위치: 이코노샤르망 5층 그린컴퓨터아카데미 별관 (주차불가) 접수기관: 경기동부지사 결제일자: 2024년 06월 11일 인 터 넷: http://www.Q-Net.or.kr			
합격(예정)자 발표일자	2024년 06월 26일 (수) 09:00 - 인터넷 : http://www.Q-Net.or.kr 발표일로부터 2개월간 - ARS : 1666-0100(개별통보 하지 않음), 발표일로부터 4일간			
검정수수료 환불안내	2024년 05월 28일(화) 10:00 ~ 2024년 05월 31일(금) 23:59 [100% 환불] 2024년 06월 01일(토) 00:00 ~ 2024년 06월 11일(화) 23:59 [50% 환불] ※ 환불기간 이후에는 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실기시험 접수기간	2024년 07월 16일(화) 10:00 ~ 2024년 07월 19일(금) 18:00 2024년 08월 11일(일) 10:00 ~ 2024년 08월 12일(월) 18:00			

기타사항

◎ 선택과목 : [필기시험: 해당없음] ◎ 면제과목 : [필기시험: 해당없음] ◎ 편의제공 요청 사항: 해당없음

(편의제공 사항 요청자는 원서접수기간내에 장애인 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편의제공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

응시자 유의사항

<(필독)국가기술자격시험 주요 변경 내역 및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1. 인정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범위 기준 >		
인정신분증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모바일큐넷(C-Net)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하전전요 학	: · 중 · 고등 남생 및 만18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모두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 및 정부24 재학증명서(※ 사진(컬러)・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발급을 원하는 수험자는 별지 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사전제출(시험당일 발급불가)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것)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신분증 인정기준

- ①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인정
- ②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 ③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NEIS 및 정부24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 ①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mark>컬러사진</mark>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②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mark>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mark>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 착해야 함(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 NEIS 및 정부24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 공학용계산기는 아래 정해진 공학용계산기 허용군만 사용 가능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종군>

제조사	허용기종군
카시오 (CASIO)	FX-901~999, FX-501~599, FX-301~ 399, FX-80~120
샤프 (SHARP)	EL-501~599, EL-5100, EL-5230, EL-5250, EL-5500
유니원 (UNIONE)	UC-600E, UC-400M, UC-800X
캐논 (Canon)	F-715SG, F-788SG, F-792SGA
모닝글로리 (MORNING GLORY)	ECS-101

-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EX 등)은 무관
- ※ 사칙연산만 가능한 일반계산기는 기종 상관없이 사용 가능
- 3. 시험장에서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전자 및 통신기기를 소지, 착용 시에는 당해시험 무효 처리(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 및 통신기기 >

- ① 휴대폰 ②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③ 태블릿 ④ 통신기능 및 전자식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시각표시기능만 있는 시계는 사용가능)⑤ MP3플레이어⑥ 디지털카메라⑦ 카메라펜 ®전자사전 ⑨라디오 ⑩ 미디어플레이어 등
- 4.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가능(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지워지는 펜 등 사용 불가)5. 가상계좌 입금마감시간 변경(타 결제방법은 전과 동일)

구 분	접수당일 13시까지 접수	접수당일 13시 이후 접수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접수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원서접수 마감일	접수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사용 불가

6. 국가기술자격증 신청·발급방식 변경

자격증 형태 ~2021. 4. 27	2021. 4. 28~ (비대면 방식으로 개편)
---------------------	-------------------------------

상장형 자격증(무료)	○ 인터넷(Q-Net, 정부24) 신청·즉시 발급	< 현행 유지 > * '21.5월부터 상장형 자격증 인터넷 사진변경 신청 가능
	○ 공단 방문 신청·발급	< 폐지 >
수첩형 자격증(유료)	○ 인터넷(Q-Net) 신청·공단 방문 수령	< 폐지 >
	○ 인터넷(Q-Net) 신청·우편배송	< 현행 유지 >

※ 국가기술자격증 신청·발급 관련 상세 안내는 큐넷(Q-Net) [공지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신청·발급 변경사항 안내" 참조

☞ 위의 세부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큐넷(Q-net)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u>(공통사항)</u>

- 1. 수험표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4. 이동 전화번호 현행화 : 방역조치사항, 응시자격서류 제출 안내 등을 위하여 시험 접수 후, 큐넷-마이페이지-개인 정보관리-개인정보수정에서 수험자 본인의 이동전화 번호 현행화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시험 중 개인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 소지가 가능하며, 그 외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 물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 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
- **`24년도는 디지털 타이머, 스톱워치 소지, 사용이 가능하나, 부정행위 방지 대상 시험장 반입 금지 전자, 통신기기에 포함여부를 검토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람(포함시 `25년 시행 국가기술자격시험부터 사용 제한)
- 시험시작 전 공단에서 허용한 물품 이외의 물품은 시험실 전면 등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 6. 시험시간 중 유·무선 인터넷의 연결 및 사용은 일절 금지됩니다.
- 7. 시험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되며, 앞으로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 8.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기능장, 기능사,산업기사,서비스,기사 등급 수험자는 허용 군 공학용계산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허용군 외 계산기 사용 불가)
- 9. 시험장이 혼잡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0.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이하인 자는 시험응시 전, <mark>인정신분증 범위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신분증 지참에 각별히 유의</mark>하시기 바랍니다.(학생증의 생년월일 기재, 사진 존재 여부 등)
- 11. NEIS 및 정부24 발급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를 지참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신분증 범위 기준의 유의사항(컬러사진 등)을 확인 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흑백사진 등) 인정 불가함에 각별히 유의)
- 12. 기타 유의사항
- *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은 접수 및 응시가 불가합니다.
- *더 나은 국가자격시험 원서접수 및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산 구축기간 ('24.10.5~'24.10.13) 시험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시험응시 및 관련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 '24. 10. 5(토) ~ '24. 10. 13(일) [9일간]

(중단 서비스) 원서접수·환불·자격증 발급 및 Q-net 등을 활용·연계한 국가자격시험 관련 제공 서비스 일체

<u>(필기시험)</u>

- 1. 기능사 필기시험의 전 종목은 CBT 방식으로 시행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 이전에 CBT 기능 체험이 필요하신 경우-큐넷 메인페이지 우측하단부-"CBT 체험하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허용군 계산기[필요 시]를 지참하여 <mark>시험시작 20분 전</mark>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 3. 필기시험 시간 중에는 부정행위예방 및 시험실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화장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 퇴실 가능 시간 : CBT 필기시험은 답안제출 완료 즉시 퇴실 가능
- 4.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습니다.
- 5. CBT 필기시험은 답안제출 이후에는 답안수정이 불가함에 따라, 답안제출 전 **모든 잔여문제에 대한 답안 마킹여부를 확인**하 신 후 **답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6. CBT 필기시험은 시험 당일 일정, 장소, 종목 변경이 불가합니다.
- 7. 필기시험(CBT) 문제 및 답안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이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기술자격 CBT 필기 시험문제 및 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5호』등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8. CBT 필기시험에서 촬영물품(넥타이카메라, 모자카메라, 초소형카메라, 카메라펜, 안경카메라 등)의 사용이 의심 되는 경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해당 물품의 점검(금속탐지기 등) 및 촬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 9. CBT 필기시험에서 시험 문제의 촬영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촬영 물품을 부정행위의 증거물로 공단에서 확보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0. CBT 필기시험은 개인 지참 연습장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별도 문제풀이용 연습지 제공 예정(단, 개인별 제공받은 연습지는 퇴실시 반드시 반납)
- 11. 시험도중 수험자 PC 장애 등 전산조치, 좌석이동 사유 및 기타 문의사항 발생 시 교실감독위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시험응시 도중 전자통신기기 또는 메모지 등 시험부정에 활용 가능한 물품을 소지,착용한 경우만이라도 시험이 정지 및 무효처리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실기시험 - 필답형)</u>

- 1. 수험자는 (1)수험표 (2)신분증 (3) 검은색 필기구(지워지는 펜 제외) (4)계산기[필요시]를 지참하여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
- 2. 시험시간 중 필기구 및 계산기 등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 3. 부정행위예방 및 시험실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필답형 실기시험은 시험시간 중도퇴실 가능시간
 - -(시험시간 60분 이하 시험)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 부터 시험실 중도 퇴실 가능
 - (시험시간 60분 초과 시험) 시험시작 60분 경과 후 부터 시험실 중도 퇴실 가능
- 5. 필답형 실기시험 문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이기할 수 없습니다.
- 6. 필답형 시험 답안정정 시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두 출(〓)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로 수정 후 다시 작성바랍니다.
 - *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에게 있습니다.(단, 인적사항을 제외한 "답안란"만 수정가능)
- 7. 필답형 실기시험 시 수험자 인적사항 및 계산식을 포함한 답안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하며, <u>그 외 연필</u> 류, <u>적색, 청색 등 유색필기구, 지워지는 펜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u> 바랍니다.

(실기시험 - 작업형)

- ... 1. 수험자는 (1)수험표 (2)신분증(모델 동반시 모델 포함), 시험에 필요한 공구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
- 2. 시험시간 중 지참공구를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 3. 실기시험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전까지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 4. 실기시험 일부 종목의 시험문제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문제지(도면 포함)를 가지고 가거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 5. 작업형 실기시험 시 공단에서 지급하는 재료는, 시험종료 후 수험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 6. <u>미용사 종목 모델은 수험자와 동일하게 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u>하지 않은 경우 모델로 시험에 <u>참여가 불가능합니다.</u>
- 7. 중장비운전 종목은 응시 전 음주상태를 측정하며, 음주측정 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나온 경우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격증 · 수료증 · 경력증명서를 한 장에

지금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해 보세요



HRDK きっとむせきるひ





시험장소약도보기

수험표 출력